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용호 의원(찬성자 : 35명)

나. 의안번호 : 제 2606 호

다. 발의일자 : 2025. 3. 31.

라. 회부일자 : 2025. 4. 2.

2. 제안이유

- '25.1.1일자로 서울시 기반시설 총괄관리 업무가 기존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정책과에서 건설기술정책관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본 조례의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소관부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건설기술정책관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에 재난안전실장을 추가하며, 위원회 간사를 기술심사담당관으로 변경함(안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25. 04. 05.~04. 09.)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안은 '25.1.1일자로 기존에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정책과에서 담당하던 기반시설 총괄관리 업무가 건설기술정책관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직책 등을 변경된 소관부서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기본원칙)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기반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 ----- -----.
① (생략)	1.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생략)	2.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5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 ③ (생략)	제15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u>재난안전실장</u> 으로 한다.	④ ----- ----- ----- ----- <u>건설기술정책관</u>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당연직 위원 : <u>교통실장</u> , 재정기획관, 물순환안전국장, 서울아리수본부장, 서울교통공사 사장,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2. ----- <u>재난안전실장, 교통실장</u> -----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u>재난안전실 담당과장</u> 이 된다.	⑥ ----- ----- <u>기술심사담당관</u> ----- -----.

■ 배경

가. 기반시설 관리업무 추진 및 이관 경위

- 서울시는 '20.1.1일 시행('18.12.31.제정)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 제9조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2)에 따라 5년 주기의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가 부여되었으며, 이에 '21.1월 안전총괄실(現 재난안전실)에서 ‘제1차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관리계획(‘20~’25년)’([표] 참조)을 수립하여 주관 부서별로 기반시설을 관리해 왔음.

[표] ‘제1차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관리계획(‘20~’25년)’ 개요

□ 계획의 대상		
○ 기반시설 7종과 기반시설에 속하는 하위 기반시설물로 구분		
[표] 서울시 관리계획 대상 기반시설		
시설 구분	기반시설	하위 기반시설물
교통시설	도로	도로포장, 교량, 터널, 옹벽, 절토사면
	철도	교량, 터널, 옹벽, 절토사면, 역사, 차량기지
유통·공급시설	수도공급설비	상수관로, 정수장, 취수장, 가압장, 배수지
	열공급설비	열수송관
	공동구	공동구
방재시설	하천	수문, 제방, 배수펌프장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하수관로(차집관로 포함), 하수처리장

- 1)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9조(기반시설 관리계획)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 ⑦ (생략)
- 2)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4조(기반시설 관리계획) ① 법 제6조에 따른 관리주체별 관리감독기관의 장(이하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 7. (생략)
② ~ ⑤ (생략)

□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관내 전 지역

○ 시간적 범위 : 2020년~2025년

※ 목표연도의 끝자리를 '0' 또는 '5'로 하기 위해 제1차 계획 기간은 6년('20~'25)으로 설정

○ 내용적 범위

- 기반시설의 현황, 여건변화 및 미래전망
-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 기반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재원의 조달·운용
- 성능평가 및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실시계획과 결과
-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의 실시계획과 결과
- 기반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수집 및 보존과 정보관리체계 구축
- 그 밖에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그러나 도로(재난안전실), 도시철도(교통실), 상수도(서울아리수본부), 열수송관(기후환경본부), 하수도(물순환안전국) 등 기반시설별 주관 부서가 상이([표] 참조)하고 기반시설 계획부터 유지관리까지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던바,

○ 서울시는 '25.1.1일 자로 기존 재난안전실이 담당하던 기반시설 관리 업무를 건설기술정책관으로 이관하여 업무 체계를 일원화³⁾ 하고자 하였으며, 기존에 재난안전실이 수립했던 '제1차 기반시설 관리 계획' 종료 시점(2025.12.31.)이 다가옴에 따라 현재는 업무를 이관받은 건설기술정책관이 '제2차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⁴⁾하고 있는 상황임.

3) '市 기반시설 총괄관리 업무 이관계획' 건설기술정책관 기술심사담당관(2024.10.21.)

— 《 행정2부시장 업무보고('24.7.19.) 》 —

(신설)건설기술정책관은 각 부서에서 단편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미래 도시 인프라 관련 사항(탄소중립, 기후변화, 상하수도, 친환경, 안전 등)을 총괄하여 市 기반시설의 첨단·복합화 및 통합관리 등 종합 추진

4) '제2차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관리계획('26~'30년)' 건설기술정책관 기술심사담당관에서 4월 중 방침을 수립하여 4~5월 용역 발주 예정.

[표] 서울시 기반시설에 따른 주관 및 관리부서 현황

시설물	주관부서	종 류	시설물 관리부서(기관)
교통 시설	도 로	재난안전실 도로시설과 도로계획과(민자)	한강교량, 일반교량, 고가차도, 복개구조물, 입체교차
		보도육교	교량안전과, 자치구(도로과), 민자사업자(도 로), 도로사업소, 미래한강본부(시설관리과)
		터널, 지하차도, 언더패스	자치구(도로과)
		지하보도	자치구(도로과), 도로사업소, 민자사업자(도로)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도로계획과(민자)	옹벽
			절토사면
	도 시 철 도 (지하철)	교통실 도시철도과	포장
			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자치구(도로과), 민자사업자(도로)
유·통 공급 시설	상 수 도	서울아리수본부 (시설관리과)	관로
			가압장
		서울아리수본부 (생산관리과)	배수지
			정수장
	열수송관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취수장
			관로
방재 시설	하 천 및 방 재 설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
			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아리수정수센터(정수시설과)
환경 기초 시설	하 수 도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서울에너지공사
			공 동 구
			공 동 구
			서울시설공단(공동구관리처)
방재 시설	하 천 및 방 재 설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수중보
			수문
			제방
			펌프장
환경 기초 시설	하 수 도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하수관로
			하수관로
			물재생센터
			차집관로

나.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 현황

○ 위원회는 현행 조례 제15조⁵⁾에 따라 서울시 기반시설의 관리에

5)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제15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시
장은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
하여 "서울특별시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자문
2. 제9조제1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 설정 심의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기준 설정 심의
4.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 결과 자문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 부위원장은 재난안전실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교통실장, 재정기획관, 물순환안전국장, 서울아리수본부장, 서울교통공사 사장,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등 관련 기관의 장으로 구성하며,
- 위촉직 위원은 학계, 기업, 민간단체, 서울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중 기반시설 관련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 총 4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음.
- 그러나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사항이 주로 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점에 집중되어 발생하는 특성으로 인해, '20. 10월 두 차례의 회의 개최([표] 참조) 이후 현재까지 추가 회의는 개최되지 않은 상태이며,
- 이러한 위원회의 여건을 고려하여 '23.7.18일 자로 조례를 개정⁶⁾해 기존의 상설위원회 운영 방식을 안전 발생 시에만 회의를 개최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음.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1. 위촉직 위원 : 학계, 기업, 민간단체,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기반시설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당연직 위원 : 교통실장, 재정기획관, 물순환안전국장, 서울아리수본부장, 서울교통공사 사장,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⑤ ~ ⑥ (생략)

6)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제15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 ④ (생략)

⑤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7.18.>

[표] 기반시설관리위원회 개최 실적(2회)

위원회명	회의일자	회의안건	참석위원
기반시설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	'20.10.21.	기반시설 관리계획(안), 최소유지관리·성능개선 기준(안) 자문 - 교통시설 분야	외부위원 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노후인프라센터장) 이○○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강○○ (한국시설안전공단 처장) 정○○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내부위원 (팀장 및 주무관 참석) 박○○ 시설5급 (도로시설과) 고○○ 시설7급 (도로관리과) 신○○ 시설6급 (서울교통공사과)
	'20.10.23.	기반시설 관리계획(안), 최소유지관리·성능개선 기준(안) 자문 - 환경기초, 방재, 유통 공급시설 분야	외부위원 최○○ (연세대학교 교수) 임○○ (한국수자원공사 맑은물연구소장) 마○○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윤○○ (서울기술연구원 연구위원) 김○○ (한국재난정보학회 연구소장)
			내부위원 (팀장 및 주무관 참석) 이○○ 시설5급 (물재생계획과) 김○○ 공업5급 (물재생시설과) 이○○ 공업5급 (하천관리과) 최○○ 시설7급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신○○ 시설6급 (상수도사업본부 생산관리과) 최○○ 시설7급 (서울에너지공사과)

■ 개정안 검토의견(안 제15조)

- 안 제15조제4항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현행 “재난안전실장”에서 “건설기술정책관”으로 변경하고, 같은 항 제2호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재난안전실장”을 추가하며, 제6항에서는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재난안전실 담당과장”에서 “기술심사담당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이는 '25.1.1일 자로 기반시설 총괄관리 업무가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정책과’에서 ‘건설기술정책관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이관됨

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체계를 현행 조직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하겠음.

- 또한, 부위원장에서 제외된 재난안전실장을 당연직 위원에 추가함으로써 재난안전실이 관할하는 한강교량, 일반교량, 고가차도, 복개구조물 등 기반시설에 대한 자문·심의 기능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음.